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Standards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eronautical Charts)

[제정] 2009.6.11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4.2 항공고시보(NOTAM)

4.2.1 항공고시보 발행(Promulgation)

나. 항공교통센터장은 항공고시보 발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14) 금지구역, 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의 설정,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4.2.3 항공고시보 발행기한(Time Limit)

가. 항공교통센터장은 이미 설정된 위험구역, 제한구역 또는 금지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시적인 공역제한에 관한 사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역 또는 공역을 운영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외의 훈련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일(72시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센터장은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활동의 취소 또는 활동시간 또는 공역의 규모축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한 24시간전에 신속히 공고하여야 한다.